

#### [서식 예] 채권가압류(약정금채권으로 공사대금)

#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서

수원시 권선구 당수로OOO번길 OO

채 무 자 김〇〇 (\*\*\*\*\*\*-\*\*\*\*\*\*)

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00번길 00

제3채무자 1. 주식회사 OO종합건설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OO번길 OOO 대표이사 000

- 2. OO건설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OO가 OOO 대표이사 000
- 3. OO토건 주식회사광명시 기아로 OO번길 OOO대표이사 000

청구채권의 표시 : 금 44,962,817원 (약정금채권)

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: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

## 신 청 취 지

1.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


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.

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### 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2012. 1. 11. 채무자의 자(子)인 신청외 김OO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OOOOO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'김OO는 채권자에게 24,371,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. 8. 1.부터 2011. 4. 30.까지는 연 10%, 2011. 5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(소갑제1호증 판결문), 이에 따라 김OO는 2012. 8. 17. 경부터 2014. 8. 14. 경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합계 8,200,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.
- 2. 그런데 김OO가 나머지 채무에 대해 변제를 미루고 있던 중, 김OO의 부(父) 인 채무자가 2015. 10. 3. 채권자에게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OOO 토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에 관한 나머지 채무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바(소갑제2호증 지불각서, 소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), 이로서 채무자는 김 OO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일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.
- 3. 한편 김OO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원은 원금에 앞서 변제기가 우선 도래한 이자에 충당된다 할 것인데(민법 제479조 제1항, 제2항, 제477조), 김OO가 변제를 시작한 2012. 8. 17. 경에는 이미 원금을 제외한 지연이자가 9,735,245원(= 24,371,500×[273/365, (= 2010. 8. 1부터 2011. 4. 30까지)] × 0.1 + 24,371,500×[1 + 109/365, (= 2011. 5. 1부터 2012. 8. 17까지)] × 0.25) 에 이르러, 결국 김OO가 변제한 8,200,000원은 지연이자에 모두 충당되었다 할 것입니다.



- 4. 그렇다면 채무자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2015. 10. 3.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53,162,817원(= 24,371,500 + 24,371,500×[273/365, (= 2010. 8. 1부터 2011. 4. 30까지)] × 0.1 + 24,371,500×[4 + 156/366, (= 2011. 5. 1부터 2015. 10. 3까지)] × 0.25)에서 기변제한 8,200,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,962,817원 및 이에 대하여 본안 소송 관련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.
- 5.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, 채무자에게는 별지기재 공사대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향후 본안 판결의 집행 불능에 대비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 아울러 채권자의 자력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,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소 명 방 법

판결문

1. 소갑 제1호증

1. 소갑 제2호증 지불각서

1.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

## 첨부서류

1. 위 소명방법 각 1통

1. 부동산등기부등본(채무자 주소지, 토지 및 건물) 각 1통

1. 납부서 1통



1. 가압류신청 진술서

1통

1. 법인등기부등본

3통

20 . 1. .

위 채권자 양OO (서명 또는 날인)

OO지방법원 귀중



별 지

#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

청구금액 금 44,962,817원 (약정금채권)

#### 1. 위 청구금액 중 10,000,000원에 대하여

채무자 양OO이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종합건설로부터 전남 광양시 황금동 산 100번지 일원에 대한 토지 평탄화 공사를 수행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.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함.

### 2. 위 청구금액 중 10,000,000원에 대하여

채무자 양OO이 제3채무자 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경남 통영시 용남면 산150번지 일원에 대한 토지 평탄화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.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함.

### 3. 위 청구금액 중 24,962,817원에 대하여

채무자 양OO이 제3채무자 OO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전북 김제시 금산면 산50번지 일원에 대한 토지 평탄화 공사를 수행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 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.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함. 끝.



[별 지 2]

### 가압류신청 진술서

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.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,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 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.

> 20 . . . 채권자(소송대리인) \_\_\_\_\_(날인 또는 서명) ※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
> > ◇ 다음 ◇

#### 1. 피보전권리(청구채권)와 관련하여

가.	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?	
	□ 예	
	□ 아니오 → 채무자 주장의 요지 :	
	□ 기타:	
나.	채무자의 의사를 언제,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? (소명/	아토

- 료 첨부)
- 다.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? (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) □ 예 □ 아니오

#### 2.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

- 가.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 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?
- 나.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 까?



다.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?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
라. [채무자가 (연대)보증인인 경우]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?
마. [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]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? (소명자료첨부)
바. [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]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?  □ 예 □ 아니오 →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사. ["예"로 대답한 경우]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,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□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→ 부동산등기부등본 및가액소명자료 첨부 □ 기타 사유 → 내용:
아. [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]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, 가액은?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? 그 결과는?
3.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 가.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?  □ 예 □ 아니오



나	["બો	" 로	대	답한	경-	우]

	$\bigcirc$	본안소송을	제기하	번워	• 사거번호	• 사건명은	?
--	------------	-------	-----	----	--------	--------	---

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?

다.	["아니오"로	대답한 경우]	채권자는	본안소송을	제기할	예정입니까?
		본안소송 제기	예정일 :			
	□ 아니 ♡	→ 사유 :				

#### 4.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

가.	채권자는	신청서에	기재한	청구채	권(금액	불문)을	원인으	로, 이	신청	외에	채무자를	상대
	로 하여	가압류를	신청한 /	사실이	있습니까	-? (과거	및 현지	내 포함	·)			

□ 예 □ 아니오

#### 나. ["예"로 대답한 경우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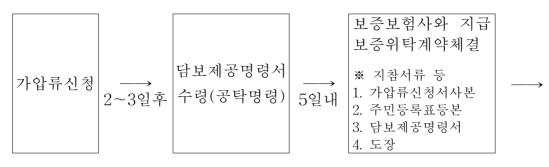
-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·사건번호·사건명은?
-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(취하/각하/인용/기각 등)는? (소명자료 첨부)
- 다. [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]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(소 명자료 첨부)



제출법원	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
제출부수	신청서 1부(당사자목록, 청구채권목록, 가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)
불복절차 및 기간	<ul> <li>(채권자)</li> <li>・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(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)</li> <li>・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(민사소송법 제444조)</li> <li>(채무자)</li> <li>・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(민사집행법 제283조), 본안의 제소명령(민사집행법 제287조)</li> <li>・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・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.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.</li> </ul>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
기 타	<ul> <li>**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</li> <li>새로 제정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(재민 2003-4) 개정 2008.</li> <li>6. 12. [재판예규 제1229호, 시행 2008. 7. 1.]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.</li> <li>11. 1.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,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</li> </ul>



※ 집행절차



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(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)

#### ※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

- 1. 채권자가 부동산·자동차·건설기계·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 청(급여채권·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)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다음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(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)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(「민사집행규칙」 제204조, 「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(재민 2003-5, 개정 2008. 6. 12. [재판예규 제1231호, 시행 2007. 8. 27.] 제6조)
  - ★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
- 2. 보증서제출과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범위의 변경
  - <u>재판예규(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</u> <u>사무처리요령)의 개정</u>에 따라, 채권자가 부동산·자동차·건설기계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 도 미리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변경되었음(2003. 10. 20.부터 접수되는 가압류 신청사건부터 적용)



허가신청 범위	종래	변경	미고
부동산,자동차,건 설기계	1/10	1/10	변동 없음
채권	1/5	2/5(다만 각 법원에서 별도 기준 설정 가능) 급여채권, 영업자예금채권은 불허	

- 3.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담보제공 기준의 변경
- 판사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**서울지방법원** 신청담당 판사들이 다음과 같이 담보제공 기준을 변경·시행하기로 합의하였음

	종래	변경	비고
무공탁	대한민국,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	대한민국	사실상 폐지
부동산 자동차	청구금액의 1/10 (현금 또는 보증서)	청구금액의 1/10 (현금 또는 보증서)	변동 없음
채권	청구금액의 1/5 (현금 또는 보증서)	청구금액의 2/5 (급여, 영업자 예금의 경우 1/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)	기준 강화
유체동산	청구금액의 1/3 (원칙적 현금)	청구금액의 4/5 (청구금액의 2/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)	기준 강화
기타		소명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	

- ※ 청구금액은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·지연손해금 등은 미포함임.
- ※ 보증금액의 1만원 미만 부분은 버림.
- ※ 판사회의에서 담보제공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고, 법원 사이의 통일적 기준 마련이 필요(신청인들이 요건이 덜 엄격한 인근 법원으로 몰리는 부작용 등 방지)하다는 점에서,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서울지방법원과 유사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
- 4. 가압류신청서상에 보증서원본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의 의사표 시를 기재하여야 함
  - 예)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(○○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○○○ -○○○ - ○○○호)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